

중대재해예방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①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학 구성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종사자(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3. “경영책임자”란 대학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학을 대표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5. “안전·보건관리자”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
6.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구성원 및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4 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대학은 모든 교육 및 작업관리 등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5 조(중대재해 예방책임) 대학의 전 구성원 등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 등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 6 조(조직의 구분) 안전·보건관리 활동상의 조직에는 총괄 관리부서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예방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 8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순찰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중대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6. 관계 법령,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 9 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6. 순찰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8. 중대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9. 관계 법령, 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학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조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 시행에 참여
7.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1 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대학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12 조(교육담당자) 대학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한다.

제 13 조(책 입) ① 전 구성원 등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각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하고, 교육담당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정기교육) 대학은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학기 중]
 - 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학기 중]
2. 교육내용
 - 가.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 15 조(관리감독자 교육) 대학은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학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 가.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2022.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